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1998 · 10 · 19 규칙 제136호
개정 1999 · 3 · 5 규칙 제151호
개정 1999 · 9 · 20 규칙 제178호
개정 2000 · 7 · 28 규칙 제203호
개정 2001 · 3 · 7 규칙 제213호
개정 2001 · 12 · 6 규칙 제234호
개정 2002 · 4 · 4 규칙 제237호
개정 2002 · 7 · 15 규칙 제241호
개정 2002 · 10 · 28 규칙 제249호
개정 2003 · 1 · 2 규칙 제253호
개정 2003 · 2 · 17 규칙 제256호
개정 2004 · 1 · 10 규칙 제270호
개정 2004 · 7 · 23 규칙 제279호
개정 2004 · 11 · 24 규칙 제283호
개정 2005 · 3 · 5 규칙 제299호
개정 2005 · 6 · 1 규칙 제303호
개정 2005 · 9 · 21 규칙 제317호
개정 2006 · 1 · 3 규칙 제325호
개정 2006 · 4 · 17 규칙 제331호
개정 2006 · 11 · 16 규칙 제341호
개정 2007 · 7 · 2 규칙 제357호
개정 2008 · 7 · 25 규칙 제374호
개정 2009 · 3 · 31 규칙 제390호
일부개정 2011 · 1 · 11 규칙 제438호
일부개정 2012 · 3 · 14 규칙 제453호
일부개정 2012 · 7 · 11 규칙 제463호
일부개정 2013 · 5 · 6 규칙 제478호
일부개정 2013 · 10 · 1 규칙 제487호
일부개정 2014 · 12 · 31 규칙 제541호
일부개정 2016 · 7 · 5 규칙 제587호
일부개정 2017 · 12 · 28 규칙 제615호
일부개정 2018 · 3 · 28 규칙 제619호
일부개정 2018 · 9 · 7 규칙 제632호

일부개정 2018 · 12 · 12 규칙 제640호
전부개정 2019 · 1 · 1 규칙 제64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 3 · 8 규칙 제647호
일부개정 2019 · 8 · 12 규칙 제657호
일부개정 2019 · 10 · 29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20 · 5 · 8 규칙 제673호
일부개정 2020 · 7 · 28 규칙 제681호
일부개정 2020 · 9 · 30 규칙 제684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0 · 11 · 13 규칙 제687호
일부개정 2020 · 12 · 29 규칙 제691호
일부개정 2021 · 11 · 5 규칙 제721호
일부개정 2021 · 12 · 28 규칙 제723호
일부개정 2022 · 3 · 7 규칙 제726호
일부개정 2022 · 4 · 22 규칙 제729호
일부개정 2022 · 8 · 11 규칙 제730호
일부개정 2022 · 9 · 5 규칙 제735호
일부개정 2022 · 9 · 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 · 3 · 6 규칙 제743호
일부개정 2023 · 11 · 1 규칙 제760호
일부개정 2023 · 12 · 13 규칙 제762호
일부개정 2024 · 4 · 1 규칙 제769호
일부개정 2024 · 7 · 1 규칙 제772호
일부개정 2024 · 9 · 20 규칙 제776호
일부개정 2024 · 12 · 26 규칙 제781호
일부개정 2025 · 6 · 30 규칙 제791호
일부개정 2025 · 12 · 26 규칙 제8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이천시 본청의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국장, 담당관·과·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소와 읍·면·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소장을 보좌하며, 담당관·과·소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분장사무) ① 각 소속기관별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9·5,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또는 내용이 2개 이상의 국·소와 관련되어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 한다. <신설 2022·9·5>

제2장 시 본청

제4조(보좌기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2·9·5, 2023·3·6, 2023·11·1>

②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9·5, 개정 2024·7·1>
[전문개정 2019·8·12]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6, 2024·7·1, 2025·12·26>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6,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6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업경제과장 및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 및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1]

제7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24·7·1]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복지정책과장·노인장애인과장·여성보육과장·청년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9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6, 2025·12·26>

②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주택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2·9·5, 2023·3·6, 2025·12·26>

[제목개정 2023·3·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7·1]

제10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6, 2025·12·26>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8, 2023·3·6, 2024·7·1, 2024·9·20>

[제목개정 2023·3·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7·1]

제11조(환경수자원국) ①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수도과장·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30>

[본조신설 2024·7·1]

제12조(첨단미래도시추진단)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첨단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7·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3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

•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7·1]

제14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0·11·13, 2023·11·1>

②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3·1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7·1]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5, 2025·12·2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삭제 <2023·12·13>

③ 농업정책과장 및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업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 및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7·1]

제4장 읍·면·동 <개정 2024·7·1>

제17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19·10·29, 2021·12·28, 2022·9·5, 2022·9·30, 2023·3·6, 2024·9·20, 2025·6·30>

읍·면·동	직위	직급(직렬)	비고
장호원읍	읍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부발읍	읍장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신둔면	면장	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	
백사면	면장	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호법면	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마장면	면장	행정·농업·시설사무관	
대월면	면장	행정·공업·농업·시설사무관	
모가면	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설성면	면장	행정·농업·환경사무관	
율면	면장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사무관	
창전동	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증포동	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중리동	동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관고동	동장	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18조(하부조직)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② 부읍·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고, 총무팀장 업무를 겸임토록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7·1]

제5장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2024·7·1>

제19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이천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5·8, 2021·11·5, 2024·7·1>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 7. 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1]

제20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7. 1]

부칙 <2019. 1. 1 규칙 제6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공포와 동시에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폐지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의 관련 국·실·과장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당관”을 “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하며,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각각“노인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기획업무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21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농정과장”을 각각“기획 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⑧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중 본청의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징수과장”으로 하고,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네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각각“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 · 징수과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2조, 제49조제1항, 제73조제4항, 제96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⑨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 ⑩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⑪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⑫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⑬ 「이천시 시보 발행규칙」 제6조 중 “예산공보담당관실”을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한다.
- ⑭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평생교육과”를 각각 “교육청소년과”로 한다.
- ⑮ 「이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

부칙 <2019·3·8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법무통계팀장”을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제5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며, 제10조 중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을 “종합민원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8·12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9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2020 · 7 · 28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 9 · 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 11 · 13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 12 · 29 규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중 복지문화분과의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하고, 여성분과의 “여성보육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시보 발행규칙」 제6조 중 “홍보관광담당관실로”를 “소통홍보담당관으로”로 한다.

부칙 <2021 · 11 · 5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장의 개방형직위 지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 12 · 28 규칙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2022 · 3 · 7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2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5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규칙 제7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징수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하며,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체육지원센터” 및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④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예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중 “기업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을 “자치교육과장”으로, “자치행정과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문예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 자원관리과장”을 “기업경제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을 “도시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⑥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본문, 제4조, 제5조제5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하며, 제10조 중 “종합민원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이천시 시보 발행규칙」 제6조 중 “소통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⑧ 「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별표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⑪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청소년과”를 “자치교육과”로 한다.

⑫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중 “문예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 · 11 · 1 규칙 제7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3 · 12 · 13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 4 · 1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 7 · 1 규칙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본청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삭제한다.

③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제10조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실·과장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자치교육과장”을 “시민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행정지원과”를 각각 “자치행정과”으로 한다.

⑦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별표 관수자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⑨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자치교육과”를 “시민교육지원과”로 한다.

부칙 <2024 · 9 · 20 규칙 제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 12 · 26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 6 · 30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2025.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 12 · 26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2·26>

소속기관별 사무분장(제3조 관련)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12·2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19조제1항 관련)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3·3·6>

[별표 4] 삭제 <2021·11·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7·1>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19조제2항 관련)

기관별	부 서	구 分		정 원	운용시한
		직급	직군		
본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4급	행정+기술	1명	2026년 10월 31일까지